

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	2013. 11. .
발 의 자	김정미 의원 외 13명

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

발 의 자 김정미, 강승수, 권기만, 김성현
김익수, 박세진, 정하영, 김상조
김수민, 김정곤, 김춘남, 김태근
윤종호, 이수태

1. 개정이유

-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

2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(안 제5조 제1항)
 - 출산축하금 : 둘째자녀 30만원, 셋째자녀 100만원, 넷째자녀 200만원,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분할(2회) 지원
 - ※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(둘째자녀 30만원 지원)
 - 출산장려금 : 둘째자녀 60만원, 셋째자녀 이상 120만원을 월별 분할(1년) 지원
- 시행시기 (안 부칙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4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출산장려금”을 각각 “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 및 지원기준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출산축하금은 출생시 50퍼센트, 첫돌시 50퍼센트로 나누어 지급한다.

1. 둘째 자녀 30만원
2. 셋째 자녀 100만원
3. 넷째 자녀 200만원
4.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60만원, 셋째자녀 이상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출산장려금은 1년에 걸쳐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출산지원금”을 “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 기준) ① <u>출산장려금</u>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·모로 한다.	제4조(지원대상 기준) ① <u>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</u> ----- ----- -----.
② 신생아 출산 후 부·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<u>출산장려금</u> 을 지원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</u> ----- -----.
제5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사업 및 지원기준) ①
1. <u>셋째자녀 이상 출생 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급</u>	<u>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출산축하금은 출생시 50퍼센트, 첫돌시 50퍼센트로 나누어 지급한다.</u>
2. <u>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1. <u>둘째 자녀 30만원</u> 2. <u>셋째 자녀 100만원</u> 3. <u>넷째 자녀 200만원</u> 4. <u>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</u>
	② <u>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60만원, 셋째자녀 이상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</u>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<u>출산지원금</u>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	<u>한다. 이 경우 출산장려금은 1년에 걸쳐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.</u> <u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 제7조(환수조치) ----- ----- <u>출산장려금</u> <u>및 출산축하금</u>----- ----- -----.
---	--

관 련 법 령

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